

[]노인주거복지시설
[]노인의료복지시설
[]노인여가복지시설
[]재가노인복지시설

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일	
신고인	성명(대표자)	법인명		
	주소	전화번호		
변경 사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	법인대표자			
	시설의 명칭			
	시설의 소재지			
	입소(이용)정원	명	명	
	시설의 종류(구체적으로 기재)			
	시설의 장	성명		
		주민등록번호		
		주소		

「노인복지법」 제40조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담당자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,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 2.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등기부 등본 2. 토지등기부 등본	

